

# 인 천 지 방 법 원

##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510372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5. 12. 17.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이상규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3.11.01. 가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9. 2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정재영	전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거 임차권자	2022.01.10.	112,000,000		2022.01.10.	2021.12.14.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정재영)	전부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2.01.10.~ 2024.01.10.	112,000,000		2022.01.10.	2021.12.14.	2025.9.22.	
<b>&lt;비고&gt;</b>										
정재영 :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2.6.임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정재영) : 임차인 정재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약약을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약약서가 제출 됨)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b>비고란</b>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건물과 관련하여 집합건축물대상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401호 다세대주택 철과이프조 11㎡ 무단증축)'로 표시되어 있음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장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510372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3-70  
삼보아트빌  
3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12번길 16

철근콘크리트조 스투브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94.28㎡  
2층 94.28㎡  
3층 94.28㎡  
4층 85.90㎡  
지층 100.64㎡  
(주택 50.82㎡, 주차장 49.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401호  
철근콘크리트조  
33.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3-70  
                  대 160.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60.4분의 14.75

제시외 1-1 철파이프조 11㎡

감정평가액		97,3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2.04	97,300,000	9,730,000
2회	2026.03.19	68,110,000	6,811,000
3회	2026.04.20	47,677,000	4,767,700
4회	2026.05.22	33,374,000	3,337,400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건물과 관련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401호 다세대주택 철파이프조 11㎡ 무단증축)'로 표시되어 있음